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 등 〉

■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412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화 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연장급여·조기재취업 수당 포함	3
2.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	8
3.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에서 자영업 삭제	12
4.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자동 취득 등	18

I. 제안경위

2026년 3월 12일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3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데이터처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활동 중인 764만 1,749개 대상 중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자영업자의 수는 674만 7,159명임에 비해, 실제 고용보험 가입 유지자는 5만 3,075명으로 가입률은 0.8%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소득에 기반하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자영업자의 실업수급 기준을 근로자와 균등하게 설정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7항, 제41조제1항 단서, 제50조제3항, 제58조제2호가목, 제69조의2 단서 삭제, 제69조의3제1호, 제69조의4제1항).

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4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연장급여·조기재취업 수당 포함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에서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을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안 제69조의2)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9조의2(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는 제37조에 따른다. <u>다만,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장급여와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한다.</u>	제69조의2(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 ----- ----- ----. <u><단서 삭제></u>

나. 검토의견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고,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음(현행법 제37조제1항, 제2항1)).

- 1)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②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구직급여는 일정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고(제51조 내지 제53조²⁾), 현행법은 이러한 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 연장급여의 상호 조정 등에 관하여도 정하고 있음(제54조, 제55조³⁾).

-
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2) **제51조(훈련연장급여)**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면 그 수급자격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훈련연장급여”라 한다)의 지급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한도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훈련대상자·훈련 과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개별연장급여)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개별연장급여”라 한다)는 6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급한다.

제53조(특별연장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직 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격자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특별연장급여”라 한다)를 지급하려면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54조(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 ①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제48조에 따른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51조에 따라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100으로 하고,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제46조제2항에 따른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제55조(연장급여의 상호 조정 등) ①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장급여는 제48조에 따라 그 수급자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에 지급한다.

②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그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개별연장급여나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그 밖에 연장급여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한편 취업촉진 수당 중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함(제64조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는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를 정하는 제4절에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는 제37조에 따르되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장급여와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한다고 정함(제69조의2).

이에 개정안은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제37조에 정하는 실업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을 포함하려는 것임.

-
- 4)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④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영세 자영업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도 일반 근로자인 피보험자와는 달리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한다는 의의가 있음.

다만 개정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자영업자는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면 폐업의 시기 등에 관하여 비교적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즉 자영업자도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수당 수령을 위해 무리하게 폐업 시기를 조절하거나 성급하게 재창업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영업자에 대하여 실업급여의 모든 종류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별연장급여(제52조)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를 위한 것인데 자영업자의 경우 생활수준 및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일반 근로자의 경우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현행법은 자영업자에 대하여만 차별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도 실업급여에서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장급여와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이 포함되도록 하는 경우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와의 형평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에 대하여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자영업자가 자발적으로 폐업하고 곧바로 창업을 반복하는 소위 ‘회전문 창업’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연장급여는 소득과악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기획예산처 또한 자영업자는 폐업 전에 전직·업종전환 등을 모색할 기회가 일반 근로자에 비해 많으므로 도덕적 해이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서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현행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는 것(안 제69조의3)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 ----- -----.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u>1년 이상</u> 일 것	1. ----- ----- ----- ----- <u>6개월 이상</u>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40조에 따르면⁵⁾,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 5)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기준기간인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⁶⁾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이어야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하며, 이직사유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위한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함.

그런데 현행법 제69조의3에 따르면⁷⁾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 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 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 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6)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 기간임.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하고 종전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함(「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 제50조제3항 및 제4항).

7)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하는 등 근로자의 경우와 다르게 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변경하여 기준기간인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르면 보다 더 많은 자영업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바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한다는 의의가 있음.

다만 개정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자영업자는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폐업의 시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자영업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맞추어 자발적으로 폐업하고 장기간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등 실업급여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경우보다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현행법은 근무의 형태나 고용관계의 유연성 등을 고려하여 자영업자뿐 아니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도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근로자와 다르게 정하고 있는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 제77조의3제1항제1호는 예술인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9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제77조의8제1항제1호는 노무제

공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2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 법 하에서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는 자영업자의 구직급여의 수급요건만 완화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은 고용형태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가입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이고, 자영업자의 경우 폐업 등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자영업자가 자발적으로 폐업하고 창업을 반복하는 소위 ‘회전문 창업’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근로자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 중인 것이며,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도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2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영업자의 최소 가입기간 단축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기획예산처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임의가입으로 인한 역선택 등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감안하여 근로자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중이고, 당연가입자인 노무제공자도 자영업자와 동일한 피보험 단위기간을 적용 중이므로, 자영업자에 한정하여 추가적인 확대 필요성은 낮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에서 자영업 삭제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서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를 삭제하는 것(안 제58조)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 ----- -----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가. 전직----- --
나.·다. (생략)	나.·다.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사유가 동법 제58조에 따

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⁸⁾

그리고 제58조는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가 되는 이직사유로서 피보험자가 ^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제1호)와 ^②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등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제2호)를 정하고 있음.⁹⁾ 한편 제77조의5제2항은 예술인에 대한 구직급여에 대해서는 제58조가 준용된다고 정하고, 제77조의10제2항은 노무제공자에 대한 구직급여에 관하여는 제58조가 준용된다고 정하고 있음.

이와 달리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제69조의3에서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제40조와 별도로 정하면서¹⁰⁾, 제69조의7에 따

8)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6. (생략)
- ② (생략)

9)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10)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

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¹¹⁾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69조의7제3호는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으로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에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

즉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제58조제2호)는 본인 의사에 따른 보험사고라고 볼 수 있는바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제58조제2호가목)와 자영업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¹²⁾가 아닌 경우로서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11) 제69조의7(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69조의3에도 불구하고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
2. 방화(放火)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3.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1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 ① 법 제69조의7제3호에서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 가.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 나.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이하 “기준월”이라 한다)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 사회적·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출액의 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다.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라.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1년 동안의 연 매출액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의 연 매출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만 해당한다)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종에 종사

업한 경우는 현행법상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됨.

개정안은 제58조제2호가목을 삭제하여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려는 것으로, 근로자 등이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자영업을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재정적 여건을 조성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창업을 장려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폐업한 경우

3.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통상영향을 받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더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
 - 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주
 - 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폐업 지원을 받은 농어업인
4. 그 밖에 생산량, 영업이익,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 ② 법 제69조의7제4호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2.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직접 간호하여야 하고, 간호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3.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
 4. 부양하여야 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하여 거소(居所)를 이전한 경우로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는 데에 3시간 이상이 걸려 폐업한 경우
 5.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폐업한 경우
- 5의2.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등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
- 5의3.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
 - 가.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
 -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한 농지 또는 어장의 수용
 - 다. 「내수면어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및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면허한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및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의 제한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 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산림보호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른 방역·방제 조치
 - 마.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농업재해 또는 어업재해
6.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다만, 개정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부 사유에 해당하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는 현행법령상 구직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다목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및 별표2에서는 근로조건의 악화, 임금체불, 불합리한 차별대우, 직장 내 괴롭힘, 경영 악화로 인한 퇴직 권고 등을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외관상 자발적으로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일부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보호하고 있음.

둘째, 실업급여 제도는 비자발적 실직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여 노동시장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자에게도 구직급여를 지급한다면 근로자의 고용유지 유인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과, 고용보험기금 재정 소요가 상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미국, 캐나다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권이 제한되고, 일본, 독일, 영국 등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수급권이 인정되나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와 수급 요건, 대기기간, 지급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음.¹³⁾

13)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셋째, 현행 법체계상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제40조 및 제58조가 적용되지 않고 제69조의7이 제58조에 대응되는 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바, 제58조를 개정하는 경우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를 수급자격 제한사유로 정하는 제69조의7제3호를 제58조와 함께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지 등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등이 자영업을 위해서 이직한 경우는 자기 사정에 의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의 사회보험으로서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자영업을 하기 위한 이직을 수급자격 제한사유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자동 취득 등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413호)의 의결을 전제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와 관련하여 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상실일·신고 및 피보험단위기간에 관하여 정하고(안 제13조 내지 안 제15조, 안 제41조, 안 제50조),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기초일액을 과세소득 기반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것(안 제69조의4)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① (생략)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3호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을 시작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 (생략)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u>법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u>	<u>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u>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 ~ ⑥ (생략) <u>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u>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자신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u>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u>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u> ②·③ (생략)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 ----- ----- ----- ----- ----- -----<u>제50조제3항 제2호 및 제4항</u>-----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①·② (생략) <u>③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u> ④·⑤ (생략)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피보험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u> 1. <u>근로자인 피보험자: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2. <u>자영업자인 피보험자: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의 존속기간</u> ④·⑤ (현행과 같음)
제69조의4(기초일액) ① 자영업자인 피	제69조의4(기초일액) ① -----

보험자이었던 수급자격자에 대한 기초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u>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을 전부 합산한 후에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u> 1. 2. (생략) ② (생략)	----- ----- -----<u>과세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u>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¹⁴⁾제1항·제2항은 자영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413호)은 자영업자가 공단의 승인 없이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도록 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그의 과세소득총액에 기반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위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

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4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와 관련하여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①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을 시작한 날에 (당연히)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개정안 제13조제2항),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¹⁵⁾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며(개정안 제14조제2항) ③ 자신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안 제15조제7항)는 내용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상실일·신고에 관하여 정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④ 종전에는 수급 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하였는데 이를 사업의 존속기간으로 정하고(개정안 제50조제3항제2호) ⑤ 개정안 제50조제3항의 호 신설에 맞추어 제41조제1항의 인용조문을 수정하며,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었던 수급자격자에 대한 기초일액¹⁶⁾은 ⑥ 종전에는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합산한 후

1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1.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
2. 제5조제5항(제6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3. 제5조제7항에 따라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
4.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16)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였는데, 개정안은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 또는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그 피보험기간 동안의 과세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는 것(개정안 제69조의4)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들 ① ~ ⑤ 사항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그에 맞추어 개정되어야 할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⑥ 사항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 도입 및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자영업자의 과세소득총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것과 맞추어 개정되어야 할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개정내용과 관련하여서는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 등에 관하여 정하는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413호)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인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첫째, 자영업자는 창업·폐업 등을 본인이 결정·통제할 수 있어 비자발적 폐업 여부 판단이 일반 근로자보다 복잡하고, 또한 소득의 변동이 심하고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고용보험에 당연가입하도록 하는 경우 고용보험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둘째,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절

반 0.9%만을 부담하고 나머지 0.9%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에 반하여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0.25%와 실업급여 보험료율 2%를 합한 2.25%의 고용보험료율을 부담함.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법」 제37조에 정하는 실업급여 중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은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음.¹⁷⁾ 자영업자는 이러한 고용보험료 부담이나 고용보험 혜택 등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 가입의사가 낮을 수 있고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에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셋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413호)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그의 “과세소득총액”에 기반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412호)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었던 수급자격자에 대한 기초일액은 “과세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는데, “과세소득총액” 및 “과세소득액”이라는 용어는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서 통용되는 용어가 아니어서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음. 그리고 이를 ㉠ ‘과세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소득의 총액’으로 본다면 사업과 무관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이 모두 합산되어¹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가 산정됨에 따라 자영업자

17) 다만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의 경우 본 개정안에는 이를 자영업자에게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본 검토보고서 3면 등 참조.

18)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의 고용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이를 ㉠ ‘사업소득’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과세소득총액” 및 “과세소득액”이라는 용어의 문언적 의미와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신고시 자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소득을 사업소득과 합산 신고하므로 사업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넷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의3 개정에 따라 매월 소득 신고가 이루어지지만¹⁹⁾, 자영업자의 경우 1년 단위로 종합소득 신고를 하므로 월별 소득의 파악이 불가하여 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월별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 ③ (생략)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가. 이자소득
- 나. 배당소득
- 다. 사업소득
- 라. 근로소득
- 마. 연금소득
-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2의2. 삭제

3. 양도소득

② ~ ③ (생략)

19) 「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② ~ ⑤ (생략)

로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고 과세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기초일액을 계산하는 것이 어려움. 따라서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는 자영업자가 매월 소득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자영업자의 소득신고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섯째, 개정안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연 매출 10억원 이상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에 대하여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을 이 법의 시행일로 한다고 정하는데, 연 매출 10억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및 연 매출 10억원 미만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에 대하여는 공포 즉시 고용보험 당연가입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이 법 시행 이전부터 자영업을 수행해 오던 자에 대하여 누구부터 개정안을 적용할지에 대한 적용례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과거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할 때에는 각각 “제77조의2에 해당하는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이 이 법 시행일 이전인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을 피보험자격 취득일로 본다.”와 “이 법 시행 전에 노무제공계약이 개시되어 노무제공계약이 끝나지 아니한 노무제공자로서 제77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제5장의3을 적용받는 노무제공자는 이 법 시행일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77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제13조제1항을 적용한다.”라는 적용례 규정이 부칙에 존재하였음.

고용노동부는 현행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의가입 방식으로 운영 중인 것이고,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 부담이 커서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에 대한 반발이 우려되며, 현재 자영업자 종합소득신고는 1년 단위인데 소득기반 고용보험료 부과를 위하여는 자영업자의 매월 소득신고가 필요하여 자영업자의 신고부담도 커진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에 대하여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의사, 소득 기반 고용보험료 부과 가능성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기획예산처 역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창업과 폐업을 본인이 통제할 수 있고 소득 파악이 어려운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의가입 방식으로 운영 중인 것이고,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상대적으로 커서 당연가입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는바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38